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03년 7월 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개정이유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동안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및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 치 : 파주시 금촌동 949-27번지
- 소유자 : 파주시
- 지목 및 면적 : 대지 231.6㎡
- 사업량(건축연면적) : 200㎡(약 60평)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지상 2층)
- 사업비 : 250,000천원(도 175,000천원 시 75,000천원)
- 지 역 : 일반주거지역

3. 검토의견

- 동 변경계획안은 파주시 금촌동 949-27번지 소재 시유지(231.6 m²)를 활용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동법 제 4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보호 시설의 신축을 통해 장애인가족의 항시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및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어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법령상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동 시설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사업비 250,000천원(도비 175,000천원, 시비 75,000천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약60평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하여 정신지체아동들의 주간보호시설로 활용될 계획임.
- 금번 신축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예정 지역이 도심내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용이 편리하고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인근에 장안하나아파트에 접해 있어 민원발생 요인이 있음.

- 그러나, 동 시설은 장애아동을 주간동안만 보호해주는 시설로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과 동일한 개념의 시설로 사전 인근 주민들을 이해시킬 경우에는 민원발생을 사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사전인근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地方財政法施行令

제84조 (公有財産의 管理計劃)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등)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

地方自治法

第35條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改正 1994. 3. 16, 1999.8.31>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처분

坡州市公有財産管理條例

제35조(公有財産 管理計劃) ①법제77조 및 영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